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19 선고 2022가단8657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이해진

피고대한민국

변론 종결2023. 8. 22.

판결 선고2023.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파주시 B 임야 95,7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1,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577㎡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ㄱ부분 참호 및 교통호 316㎡,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ㄴ부분 참호 및 교통호 303㎡,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ㄷ부분 참호 및 교통호 99㎡,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ㄹ부분 참호 및 교통호 169㎡를 각 철거하고, 위 (가)부분 5,577㎡를 인도하고,
나. 40,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23. 5. 21.부터 위 제1항 기재 (가)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56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파주시 B 임야 95,17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6. 20. 접수 제419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국방부 소속 군부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5,577m²(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이라 한다)에 참호 및 교통호(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참호 및 교통호 316m², ㄴ부분 참호 및 교통호 303m², ㄷ부분 참호 및 교통호 99m², ㄹ부분 참호 및 교통호 169m², 이하 '이 사건 각 참호 및 교통호'라 한다)를 설치하고 순찰 및 훈련 등 작전 수행을 통해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시사에 대한 감정측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점유의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참호 및 교통호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점유면적을 다투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측량감정은 피고가 주장한 점유 부분을 고려하여 이루어졌고, 감정인은 그에 따른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을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의 2017. 5. 21.부터 2023. 5. 20.까지의 임료는 아래 표와 같고,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23. 5. 21. 기준 월 임료 상당액이 56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월 임료 상당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2017. 5. 21. ~ 2018. 5. 20.	519,000	12	6,228,000
2018. 5. 21. ~ 2019. 5. 20.	535,000	12	6,420,000
2019. 5. 21. ~ 2020. 5. 20.	547,000	12	6,564,000
2020. 5. 21. ~ 2021. 5. 20.	558,000	12	6,696,000
2021. 5. 21. ~ 2022. 5. 20.	580,000	12	6,960,000
2022. 5. 21. ~ 2023. 5. 20.	619,000	12	7,428,000
합계			40,296,000

한편 피고가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한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피고가 그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 예견된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의 점유로 인한 2017. 5. 21.부터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23. 5. 2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40,296,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40,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3. 5. 2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 토지의 피고의 점유상실일까지 월 56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현진

별지

기재하였으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등에 비추어 주문에서는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차임지급의무 종료일을 '피고의 점유상실일'로 특정하고, 원고들의 청구취지 또한 이와 같은 취지로 설했다. 이하 같다.